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학회연구』 투고규정

(1998년 6월 1일)

[투고자·투고내용]

1. 본 학회지에 투고가능한 자는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학회의 회원 및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한다.
2. 원고의 내용은 체육이나 스포츠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 본 학회대회에서 발표된 것이 바람직하다.
3. 원고의 내용은 원저논문, 연구자료, 연구집회의 보고등으로 구분한다.

[심사·채택·접수]

1. 투고원고는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의하여 심사한다.
2. 원고의 채택은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지의 발행은 당분간 2년에 1회로 하고 투고의 마감은 위원회가 정한다.

[원고작성방법]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횡서로 40자, 40행의 A4 용지로 한다.
2. 원고는 모국어로 작성하고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영문초록은 600 단어 이내로 한다.
3. 투고원고는 1편당 표, 그림, 사진,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A4 용지 10매 이내로 한다.
4. 그림은 그대로 축소하여 게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명한 것으로 하고 사진은 흑백의 선명한 화질의 것으로 한다.
5. 그림, 표, 사진의 삽입장소는 본문 여백에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6. 참고문헌의 기본사항은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출판지역), 수록지, 발행년도, 인용페이지 등이지만 각국·지역의 학술적 관례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투고방법·기타]

1. 투고자는 각국·지역의 위원에게 원고를 송부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편집업무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학회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1998년 6월 1일)

1.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학회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학회연구』의 편집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편집업무
 - (2)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
 - (3) 기타 편집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각국·지역으로부터 추천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내역으로는 본 지를

발행하는 국가·지역의 4명, 그 외 국가·지역의 각 2명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학회대회종료로부터 차기 학회대회종료까지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발행국·지역의 위원으로부터 선출한다.

4. 본지에 게재하는 논문 수는 원칙적으로 각국·지역에서 1~2편으로 한다.

5. 각국·지역의 위원은 자국·지역의 원고를 심사한 후, 본지의 발행국·지역의 위원에게 송부한다.

6. 논문의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연구』 심사규정

(1998년 6월 1일)

1.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6조에 의하여 정한다.

2. 각국·지역의 위원에게 송부된 투고원고는 그 위원이 정한 2명의 심사원에 의해 심사한다. 위원이 심사원을 겸할 수 있다.

3. 투고자 및 공동연구자는 심사원이 될 수 없다.

4. 심사원은 투고원고가 체육·스포츠사의 논문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이 적절한가와 투고규정에 맞게 쓰여졌는가를 검토하고 게재의 가부를 평결한다.

5. 논문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간으로 한다.

(번역자 함장현)